

신탁계약 해지청구서

| | | | |
|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| 성명 | 소속 | 직위 (직급 등) () |
|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

| | |
|------|---|
| 해지사유 | <p>1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()</p> <p>2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()</p> <p>3.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()</p> <p>4.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·운용 중인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()</p> <p>5.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()</p> <p>※ 위의 해당되는 ()에 "√" 표시</p> |
|------|---|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0제2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